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22.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이 범 윤 의원 외 7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4월 15일
- 회부일자 : 2009년 4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4. 20 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범윤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기준을 마련하여함으로써 자연학습원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수준을 향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현실화(안 제10조의 별표)
 - 숙박비 및 연수비

(단위 : 1인당/원)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 고
	숙박비	연수비	계	숙박비	연수비	계	인상율	
초등학생	4,700	8,400	13,100	4,700	9,900	14,600	11.5%	식대는 별도징수
중 학생	5,000	8,500	13,500	5,000	10,000	15,000	11.1%	
고·대학생	5,300	8,600	13,900	5,300	10,100	15,400	10.8%	
일 반 인	8,000	9,000	17,000	8,000	10,500	18,500	8.8%	

※ 숙박비는 변동 없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학생(초·중·고·대학)과 일반인의 연수비 현실화와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자체교육 또는”을 “**자체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인 또는”을 “**법인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학습원”을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있는 자 또는”을 “**있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 자 및”을 “**하는 자와**”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연수 또는”을 “연수와”로 하고, “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을 “사용료와 연수비,”로 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2호 중 “공공 또는 공익목적”을 “공공·공공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일부 또는”을 “일부나”로 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에”를 “제1항에”로 하고, “하며,”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또는”을 “단체,”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처분 또는”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의”를 “제2항에”로 하며, “기부체납 하여야”를 “기부체납하여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이용자 또는”을 “이용자,”로 하고, “고의 또는”을 “고의나”로 하며, “원상복구 또는”을 “원상복구하거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를 “수탁관리자에게”로 하고, “위법 또는”을 “위법,”으로 하며, “정지 또는”을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에 따라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취소 또는”을 “취소하거나”로 하며,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1조 본문, 제4조 본문,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 및 ” 을 각각 앞 단어와 붙여서 “ 과 ” 로 한다.

제4조제4호, 제5조3호, 제6조제1항제4호, 제11조제2호 및 제16조제4호 중 “ 기타 ” 를 각각 “ 그 밖에 ”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제10조 관련)

□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단위 : 1인당/원)

구 분	숙박 (1일)	연수 (1일)	비 고
초 등 학 생	4,700	9,900	식대는 별도 징수
중 학 생	5,000	10,000	
고·대학생	5,300	10,100	
일 반 인	8,000	10,500	

※ 연수 1일은 3식을 기준으로 함

□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숙 박 실	일반실/1박/1인	8,000	18인용/23실
강 의 실	1실/시간	10,000	1실/150석
대 강 당	1실/시간	10,000	1실/300석
운 동 장	1면/시간	10,000	1면
잔디운동장	1면/시간	10,000	3면
야 영 장	1면/1박(텐트설치면적 9 m ²)	10,000	1,637m 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3조(위치) 학습원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p> <p>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3조(위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p> <p>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p>		

현행	개정안
<p>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p>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6조(연수신청)</p> <p>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 및 임직원 3. 일반 직장인 및 사회 단체 임직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p>	<p><u>하여</u>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학습<u>과</u>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u>과</u>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u>그 밖에</u> 도민을 위한 교육 등 <p>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u>수립 시</u>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u>과</u> 교육방법 2. 교육과정<u>과</u> 교육과목 3. <u>그 밖에</u>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6조(연수신청)</p> <p>① 연수를 신청할 수 <u>있는 자와</u>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u>과</u> 임직원 3. 일반 직장인<u>과</u> 사회 단체 임직원 4. <u>그 밖에</u>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p>

현행	개정안
<p>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하는 자와 기관·단체에서는 교육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른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과 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조(시설사용료 등) <u>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10조(시설사용료 등) <u>연수와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와 연수비,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p>	<p>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p>

현행	개정안
<p>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u>일부 또는 전부</u>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u>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u>(이하 “수탁관리자”라한다)에 학습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u>하며</u>,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u>단체 또는 개인</u>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u>범위안에서</u> 보조할 수 있다.</p>	<p>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u>일부나 전부</u>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u>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u>(이하 “수탁관리자”라한다)에 학습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u>항에</u>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u>하되</u>,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u>단체</u>,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u>과</u>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u>범위에서</u>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재산의 관리)</p> <p>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p>	<p>제13조(재산의 관리)</p> <p>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p>

현행	개정안
<p>하거나 <u>처분</u>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2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u>기부체납</u>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p>	<p>하거나 <u>처분</u>,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 <u>이용자</u> 또는 수탁관리자가 <u>고의</u> 또는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는 <u>원상복구</u>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 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p>
<p>제15조(예산 및 결산)</p> <p>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u>또한 같다</u>.</p> <p>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예산과 결산)</p> <p>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u>같다</u>.</p> <p>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p>	<p>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p>

현행	개정안
<p>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p>제17조(지도·감독)</p> <p>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u>위법</u>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u>정지</u> 또는 <u>시정</u>시킬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u>제1에 따라</u> 당해 사무를 <u>취소</u>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u>통보</u>하고 사</p>	<p><u>하나에 해당할 때에는</u>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u>그 밖에</u>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p>제17조(지도·감독)</p> <p>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수탁관리자에게</u>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u>위법</u>,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u>정지</u>, <u>시정</u>시킬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u>제1항에 따라</u> 해당 사무를 <u>취소</u>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u>알리고</u> 사</p>

현행	개정안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 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